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안 제2조제8호)

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정비(안 제6조, 별표 1, 별표 2)

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제8항)

라. 용어 및 인용사항 등 정비(안 제7조의2, 제9조, 제9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9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으로, “수거 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절차 등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절차”로 한다.

- ①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배출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연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4조제3항”을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의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구미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를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투기 금지를 위하여”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음식물쓰레기전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으로 한다.

제1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제17조제2항 본문 중 “규칙”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시의원”을 “구미시의원”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수수료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장농	폭120cm이상1쪽	15,000	
	폭120cm미만1쪽	10,000	
문갑,화장대	모든규격	3,000	
장식장(폭 또는 높이)	1m이상	6,000	
	1m미만	4,000	
서랍장	4단이상	4,000	
	4단미만	2,000	
책장(폭 또는 높이)	1m이상	4,000	
	1m미만	2,000	
신발장	1m이상	6,000	
	1m미만	3,000	
책상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3,000	
	4단미만	2,000	
옷걸이(행거)	모든 규격	2,000	
의자	사무용, 2인용이상	4,000	
	일반의자	2,000	
쇼파	4인용이상	10,000	
	4인용미만	7,000	
	1인용	4,000	
침대 세트 (프레임+매트리스)	더블 사이즈 이상	15,000	
	싱글, 슈퍼싱글	10,000	
침대 프레임	더블 사이즈 이상	7,000	
	싱글, 슈퍼싱글	5,000	
유아침대	모든규격	5,000	
매트리스	더블 사이즈 이상	8,000	
	싱글, 슈퍼싱글	5,000	
침대(돌, 옥, 황토)	2인용	30,000	
	1인용	20,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20,000	
탁자	모든규격	3,000	
난방용품			
난로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2,000	
보일러등유류통	1톤당	5,000	
전기스토브	모든규격	2,000	
전기장판,온수매트	모든규격	4,000	
주방용품			
식탁	대리석 1㎡이상	15,000	
	대리석 1㎡미만	10,000	
	6인이상	7,000	
	6인미만	5,000	
교자상	대형(4인이상)	2,000	
	소형(4인미만)	1,000	
썰크대	1쪽	3,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높이1m미만	2,000	
전기(압력)밥솥(통)	모든규격	2,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믹서기,분쇄기,	모든규격	1,000	
식기(세척)건조기	인공건조(동력)	4,000	
	자연건조(무동력)	2,000	
전자후라이팬	모든규격	2,000	
가전제품			
TV	25인치 이상	5,000	
	25인치 미만	3,000	
오디오	폭 또는 높이1m이상	5,000	
	폭 또는 높이1m미만	3,000	
	스피커1쪽당	2,000	
냉장고	업소용	15,000	
	500 L 이상	10,000	
	300L이상 500L미만	6,000	
	300 L 미만	4,000	
에어컨,온풍기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미만	3,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4,000	
	높이1m미만	2,000	
전자오락기(게임기)	높이1m이상	10,000	
	높이1m미만	5,000	
선풍기	모든규격	2,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개인용컴퓨터	본체	2,000	
	모니터	2,000	
	프린터기	2,000	
	키보드	1,000	
	스피커(대형)	2,000	
	스피커(소형)	1,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복사기	모든규격	15,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정수기	높이 1미터 이상	5,000	
	높이 1미터 미만	3,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세탁기, 건조기	모든규격	5,000	
커피메이커	소형 가정용	2,000	
	업소용	5,000	
악기·모빌리티·레저·스포츠			
피아노	그랜드	20,000	
	어프라이트	15,000	
	디지털	5,000	
오르간	모든규격	4,000	
자전거	어른용	5,000	
	어린이용	3,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휠체어	전동	8,000	
	일반	3,000	
보행기,유모차	모든규격	2,000	
킥보드	전동	5,000	
	일반	2,000	
카시트	모든규격	3,000	
여행용가방	모든규격	2,000	
타이어	립외경19인치이상	5,000	
	립외경19인치미만	3,000	
운동기구	런닝머신	10,000	
	실내자전거	5,000	
스텝퍼	소형	2,000	
	대형(손잡이일체형)	4,000	
텐트, 타프	그늘막, 팝업텐트	2,000	
	거실형,돛형,타프	5,000	
탁구대	모든규격	10,000	
당구대	가정용 미니	5,000	
	영업용 (중대)	30,000	
	영업용 (대대)	40,000	
스키(폴포함), 보드	모든규격	3,000	
부츠(스키,보드)	모든규격	2,000	
골프·낚시가방	모든규격	3,000	
골프채, 낚시대	개당	1,000	
등산스틱	모든규격	1,000	
생활잡화			
전화기	모든규격	1,000	
액자	1㎡이상	3,000	
	1㎡미만	1,000	
거울	1㎡이상	3,000	
	1㎡미만	1,000	
수족관	1㎡이상	10,000	
	1㎡미만	6,000	
카페트,돗자리	1㎡이상	4,000	
	1㎡미만	2,000	
화분	높이또는직경50cm이상	2,000	
	높이또는직경50cm미만	1,000	
변기	양변기	10,000	
	좌변기	5,000	
	비데	3,000	
이불	솜이불(장당)	2,000	
	홀이불(장당)	1,000	
벽시계	대형(1m이상)	5,000	
	중형(0.5m이상~1m미만)	3,000	
	소형(0.5m미만)	1,000	
장판	3㎡당	1,000	
보일러	모든규격	5,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욕조	모든규격(대리석외)	5,000	
	모든규격(대리석)	15,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폐소화기 (규격기준)	15kg 이상	7,000	
	7kg~15kg미만	5,000	
	3.3kg 이상	3,000	
	3.3kg 미만	2,000	
플라스틱장난감	대형(20kg이상)	5,000	
	소형(20kg미만)	1,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우산	개당	1,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항아리	대형(100리터 이상)	7,000	
	중형(30리터 이상)	4,000	
	소형(30리터 미만)	2,000	
책상(식탁) 유리	긴쪽 1.5m 미만	3,000	
	긴쪽 1.5m 이상	5,000	
깨진유리, 항아리	1kg당	1,000	
애완동물집, 캣타워	모든규격	4,000	
재봉틀	모든규격	4,000	
병풍	모든규격	5,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고무대야	지름 1m 이상	5,000	
	지름 50cm 이상	3,000	
	지름 50cm 미만	2,000	
파라솔	모든 규격	4,000	
평상	긴쪽 2m 이상	10,000	
	긴쪽 1.5m 이상	7,000	
	긴쪽 1.5m 미만	5,000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놀이매트	1㎡당	2,000	
요가매트	1인용	2,000	
블라인드	1.2m 미만(개당)	2,000	
	1.2m 이상(개당)	4,000	
아이스박스	소형 (50리터 미만)	2,000	
	대형 (50리터 이상)	3,000	
화이트보드	긴쪽 1m 미만	2,000	
	긴쪽 1m 이상	4,000	
기타			
물탱크저수조	1톤당	10,000	
파티션	2m 이상	5,000	
	2m 미만	4,000	
문	유리문	15,000	
	철문	5,000	
	실내문	3,000	
방충망	긴쪽 1.2m 미만	2,000	
	긴쪽 1.2m 이상	4,000	
스티로폼 (재활용 불가품)	1㎡미만	15,000	
	1㎡초과0.1㎡마다	1,500	
	5㎡이상	75,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간판	높이,폭 1m 이상	6,000	
	높이,폭 1m 미만	4,000	
목재류	kg 당	1,000	
파레트	모든규격	4,000	
금고	높이 50cm 미만	10,000	
	높이 50cm 이상	15,000	
마네킹	상반신, 하반신	3,000	
	전신	5,000	
드럼통, 가스통	개당	3,000	
기름탱크	400리터 미만	5,000	
	400리터 이상	7,000	
에어라이트	모든규격	10,000	
화환	모든 규격	3,0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생활폐기물의 배출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배출 대상)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가연성폐기물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 앞에 배출 (문전 수거 원칙)	배 출 일 : 읍·면·동별 수거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2. 음식물류 폐기물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 병뚜껑, 젓가락 등 이물질 제거 후 종량기(RFID)에 배출하거나 전용 수거 용기 또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배 출 일 : 읍·면·동별 수거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3. 대형폐기물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가구류,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에 의한 스티커 부착 후 배출	배 출 일 : 읍·면·동별 수거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4. 연탄재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연탄재	-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배출	배 출 일 : 읍·면·동별 수거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5.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 목	배 출 요 령
폐의약품	-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폐농약	-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집중수거 기간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수거 장소에 배출
폐형광등, 폐건전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
폐페인트	-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

6. 재활용품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1) 종 이 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배 출 일 : 읍·면·동별 수거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 책자, 노트, 종이쇼팽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배 출 일 : 읍·면·동별 수거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들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배 출 일 : 읍·면·동별 수거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 농약병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배 출 일 : 읍·면·동별 수거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위와 같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5) 플 라 스 틱 류	- 투명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배 출 일 : 읍·면·동별 수거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스티로폼	- 과일, 생선상자 등을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 회수 의무가 부여된 전기·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해당 제품의 재활용 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게 배출 -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 재질(PE, PP)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6) 폐 형 광 등 및 필 름 류	- 폐형광등	- 배출 시 깨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 외피(포장재)를 벗겨서 배출 - 배출 시에는 해당 읍·면·동의 폐형광등 전용 회수함에 배출 - 깨어진 형광등은 분류하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 필름류 포장재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농축산품류 등 필름류포장재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름류 포장재만 담아서 배출 - 1회용 비닐봉투는 별도 분리배출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				
대행지정 업 체	업 체 명		업 종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행업체 대상지역				
폐기물의 종 류		폐기물량	톤/일	
대행지정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읍면동 보관용)					일련번호	
배출자 (건물주)		생년월일				
		연락처				
배출장소 (주소)						
공사업체명		공사내용				
공사업체 대표자		연락처				
공사업체 주소						
폐기물 종류		공사기간 중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반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락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기록물 보존기간인 3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폐기물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 확인사항 1.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자원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제7호, 제6조제6항제2호) 2. 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 장	읍면동장	결 재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 (배출자, 읍면동 보관용) 신청번호				
운반자	성명		전화번호	
	배출자와의 관계		차량번호	
	폐기물종류			
	공사기간 중 총 예상 배출량		현장 확인일	
현장 사진				
위치도 (구미시 ○○○) ※도로명 주소 기입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기록물 보존기간인 3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폐기물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확인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배출자는 사본을 보관 (단, 현장 확인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 ○ 읍.면.동 장 (직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 (읍면동 보관용)						신청번호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배출자와의 관계	☐ 본인, ☐ 공사 계약상대자, ☐ 기타													
배출 현황	배출자 성명		전화번호												
	배출장소														
	공사(작업)명														
	공사(작업) 예상기간														
확인자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배출장소 현장 확인일		공사기간 중 총 예상 배출량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위 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배출장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기록물 보존기간인 3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폐기물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정동에 사전 신고합니다.(단, 현장 확인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담당자</th> <th style="width: 25%;">팀 장</th> <th style="width: 25%;">읍면동장</th> <th style="width: 25%;"></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60px;"></td> <td></td> <td></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결재</td> </tr> </tbody> </table>								담당자	팀 장	읍면동장					결재
담당자	팀 장	읍면동장													
			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생활계 유해폐기물</u> ”이란 법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 <u>규칙</u> ”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u>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u> <u>②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 <u>③ (생략)</u>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u>①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배출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연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u>재활용품</u>”이라 한다)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u> <u><삭제></u> <u>② (현행과 같음)</u>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
활용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
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를 분리·수집할 경우 음식물전
용 봉투에 담지 않고 별도의 방
법으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⑨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
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
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절
차 등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
리 협조) ① 법 제1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
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삭 제>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1항-----

----- 배출
장소, 배출용기, 배출절차 ----

-----.

제7조의2(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
리 협조) ① -----
----- 생활폐기물배출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대행) ① -----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 동의권을 얻어야 한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울 경우

2. 3. (생략)

②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

----- 폐기물처리업자-----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의 제6조제1항-----

1. 구미시-----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재정경제부장관-----

⑤ (현행과 같음)

⑥ ----- 규칙 -----

하야야 한다.

⑦ (생략)

제9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시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
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
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
다.

1. · 2. (생략)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 규칙 -

----- . ----- 규칙 -----

----- .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
항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
라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투
기 금지를 위하여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

설 등의 설치) ① (생 략)

② 시장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량 배출 시설 등 건축 허가 신고 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생 략)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반투명으로 제작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로 한다.

④ 제3항의 봉투용량 중 20리터 봉투는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봉투 색깔은 일반용 봉투와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⑦ (생 략)

<신 설>

설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생활폐기물배출자-----

-----.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후에너지환경부-----

-----.

③ 종량제봉투-----

-----.

④ -----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

-----.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주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④ (생략)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

라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로 구성하며 공무원, <u>시의원</u>, 학 계, 환경단체, 여성단체, 폐기물 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 장이 위촉한다. ③ ~ ⑤ (생 략)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u>으로 정한 다.	----- <u>구미시의원</u>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규칙) ----- ----- <u>시행규칙</u>----- --.
--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 ⑩ 생략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

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 ⑥ 생략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6조제8항 :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7년 ~ 2031년(5년, 1~5차년도)
- 세입 : 종량제봉투 등 판매수입
- 세출 :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상세내역 첨부)
 - 수행업무 : 종량제 관련 물품 제작, 주문접수, 배달, 재고관리 등
제작·유통·판매 전반
 - 운영인력 : 6명(행정인력 2, 배송인력 4)
 - 종량제 관련 물품 제작 : 1,439만 매/년
 - 종량제봉투 1,338만, 대형폐기물 스티커 33만,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66만, 음식물 종량제봉투 2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봉투 등 판매	10,866	10,866	10,866	10,866	10,866	54,330
	소계(a)	10,866	10,866	10,866	10,866	10,866	54,330
세출	○ 인건비 등	1,774	1,724	1,724	1,724	1,724	8,670
	소계(b)	1,774	1,724	1,724	1,724	1,724	8,670
□ 총 비용(a-b)		9,092	9,142	9,142	9,142	9,142	45,66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774	1,724	1,724	1,724	1,724	8,67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774	1,724	1,724	1,724	1,724	8,67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후 제작 물량, 운영 규모 및 세부 운영계획 등에 따라 실제 소요 예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 자원순환과 지방공업주사 이민섭(☎480-520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종량제봉투	9,226	9,226	9,226	9,226	9,226	46,130
대형폐기물 스티커	1,007	1,007	1,007	1,007	1,007	5,035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633	633	633	633	633	3,165
합 계	10,866	10,866	10,866	10,866	10,866	54,330

2.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인건비	운영인력(6명)	324	324	324	324	1,620
	소 계	324	324	324	324	1,620
공공운영비	유류대 및 시설장비 유지비	10	10	10	10	50
	보험료 (봉투창고, 차량)	3	3	3	3	15
	공공요금 (전기, 수도, 통신 등)	3	3	3	3	15
	소 계	16	16	16	16	80
사무관리비	납입고지서 및 안내문 등 제작	4	4	4	4	20
	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입	5	5	5	5	25
	온라인시스템 호스팅 공급비	5	5	5	5	25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2	2	2	2	10
	소 계	16	16	16	16	80
재료비	종량제봉투 제작	1,022	1,022	1,022	1,022	5,110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58	58	58	58	290
	재활용쓰레기 봉투 제작	7	7	7	7	35
	물류관리용 QR코드 제작	23	23	23	23	11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납부필증 제작	30	30	30	30	150
	소 계	1,140	1,140	1,140	1,140	5,700
자산취득비	화물차량 구입	50	-	-	-	50
	소 계	50	-	-	-	50
기타	여비·교육훈련비	3	3	3	3	15
	분담금(지원부서)	150	150	150	150	750
	대행수수료	75	75	75	75	375
	소 계	228	228	228	228	1,140
합 계		1,774	1,724	1,724	1,724	8,670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김 형 순
	팀 장	박 재 응
	담 당 자	이 민 섭 (480-5202)